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29

발의연월일: 2020. 9. 14.

발 의 자:이원택·기동민·이상직

윤미향•박성준•김경만

한병도 · 남인순 · 김정호

전재수 · 김윤덕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하여는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 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,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6호, 제5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농업용 로봇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조의2(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의2(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의 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로봇에 대한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·개발 및 보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전문기관의 지정,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5조(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
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농업용 로봇의 연구·개발 및
보급에 관한 사항
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
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
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
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
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
를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반
<u>영하여야 한다.</u>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
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
관계 행정기관 장 등에게 필요
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
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
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
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주기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의 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로봇에 대한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·개발 및 보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전문기관의 지정,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